

일본 보육정책 동향

| 유희정 편역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일본 보육정책 동향

| 유희정 편역

일본 보육정책 동향

| 유희정 편역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발간사

최근 들어 많은 국가들이 육아지원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인구 감소의 위기와 여성경제 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정책으로서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육아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함과 더불어 좀 더 효과적인 육아지원정책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인적 자원의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며, 인생 초기 영유아기 성장과 발달에 대한 지원이 여타 시기의 지원보다 효과적 일뿐더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요 선진국에서의 실증적 연구 결과들 때문에도 영유아기 육아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들을 마련하고 또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연속 간행될 세계의 육아정책 동향은 각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근 육아정책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소개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위기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하고 획기적인 육아정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일본의 보육정책 동향을 시작으로, 많은 육아 선진국들의 육아지원정책 동향을 계속 소개할 예정입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육아정책 정보들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세부 육아지원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ONTENTS

목차

1장

일본의 보육제도

1. 시정촌(市町村)의 책임과 역할 • 4
2. 인가보육소 설치기준 • 9
3. 보육현황 • 11
4. 관리감독체계 • 27

2장

최근 보육정책의 동향

1. 자녀양육 지원대책 • 30
2. 보육소 활용방안의 전환과 구조개혁 • 35
3. 민간참여 활성화 정책 • 39
4. 유아교육 · 보육 통합정책 • 41

부록

- I. 나고야시 보육소 운영 CHECK POINT • 48
- II. 나고야시 보육소 운영 서류 목록 • 51

참고 문헌

• 53

일본의 보육제도

1. 시정촌(市町村)의 책임과 역할

가. 보육소 입소보장

아동복지법 제 24조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市町村¹⁾이 책임을 지고 아동을 보육소에 입소시켜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그러나 근로, 질병, 장애, 임신 출산, 재해 또는 가정 내 간호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市町村이 양육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써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이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보호자의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아동의 발달상황, 부모의 육아불안, 학대 등으로 인해 보육소에서 보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복지사

1) 일본의 都道府縣은 우리나라의 16개 시·도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임. 市町村은 우리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임.

무소장 및 아동상담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市町村이 보호자에게 입소 신청을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 이는 모든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市町村의 당연한 책임사항이다.

나. 보육소 설치 의무

市町村의 가장 우선적인 업무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을 위해 보육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은 都道府縣 및 市町村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보육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보육을 보장할 책임은 市町村에 있으므로 市町村은 적극적으로 보육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공립보육소 설치가 곤란한 경우 법인시설에 아동 보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모든 아동의 보육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시설 역시 보육환경에 대해 최저기준 이상의 수준을 확보하여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운영과 시설을 정비할 의무가 市町村에 부과되어 있다.

다. 보육소 입소를 희망하는 아동의 보육 보장 의무

현재 보육소에 입소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정원 부족으로 입소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아동은 약 40,000명으로 추정된다. 대기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소를 충분히 설치해야 하는 것이 市町村의 첫번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인가보육소가 충분히 확충되어 있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인가보육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책임이 市町村에 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무
인가보육소의 인가화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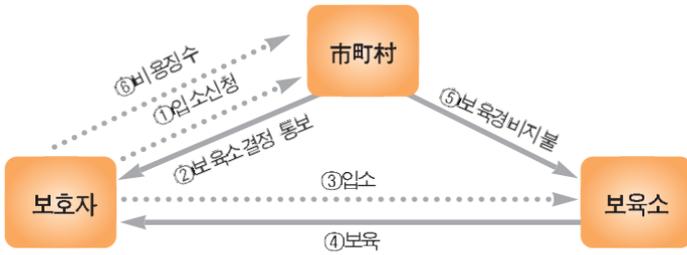
라. 보육시책 추진 의무

市町村은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상황, 보호자의 다양한 보육수요를
파악하여 보육시책을 계획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보육료의 경감, 보육시간의 연장과 야간보육, 병아보육, 휴일보
육, 일시보육 등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청취하여 보육시책에 반영하
여야 한다.

마. 보육소 입소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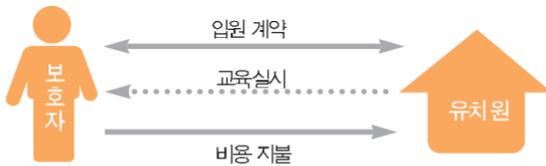
보육에 대한 市町村의 책임은 보육소 신청절차에 잘 나타나 있다. 보
육소 입소는 보육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市町村과 보호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자녀를 보육소에 입소시키기를 원하는 경우, 부
모는 보육이 필요한 이유와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소를 함께 기입하여
市町村에 제출한다. 市町村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동에게 적합
한 보육소를 선정한 후 이를 부모에게 통보한다. 보육료는 입소 후 市
町村에 납부한다. 이와 같이 자녀를 보육하는 곳은 공립·법인 보육소
이나 입소신청과 결정, 보육료 납부 등 市町村의 책임하에 모든 것이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본의 공적보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의
보육을 담당하는 곳은 공립·법인 보육소이지만 입소신청과 보육소
결정, 보육료 납부 등 모든 것이 市町村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유치원과는 다른 보육소의 공적보육제도이다.

그림 1 보육소 입소 방식



유치원 입원절차는 보육소와는 대조적으로 보호자와 유치원이 입원과 비용을 직접 계약하여 결정한다.

그림 2 유치원 입원방식



바. 보육소 운영비의 공적부담

공적보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또 하나의 원칙은 보육비용의 공적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육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국가가 정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아동을 보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은 인가 공립·법인 보육소에서 아동의 보육비용으로

사용한 액수에 대해서는 市町村이 우선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市町村이 부담한 비용 중에서 부모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의 2분의 1은 정부가, 나머지 4분의 1은 都道府縣이, 4분의 1은 市町村이 부담한다.

보육소 운영비의 공적부담원칙은 아동복지법제정 당시 법제화된 것이다. 1947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10분의 8, 나머지의 10분의 2에 대해서는 都道府縣과 市町村이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사회복지 비용지출이 점점 늘어나자이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국고부담을 2분의 1로 축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 지역사회 보육의 서비스 수준 향상 의무

市町村은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에게 수준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보육조건 확보와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지역의 보육소, 유치원, 아동관, 자녀양육지원센터, 보건소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의 모든 아동에게 보다 나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인가보육소 설치기준

가.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1947년에 제정된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은 공립·법인 보육소의 인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기준으로 보육소가 최소한 지켜야 하는 시설설비, 인원배치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아동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市町村의 책임 하에 아동을 입소시킨 이상 보육소가 전국 어느 지역에 소지하고 있든 시설의 설비 등이 일정수준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 보육소의 조건이 달라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없다면, 아동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음은 물론이고 市町村도 보육의 책임을 완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소의 설비, 조건, 운영에서 일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육소의 최저기준이 1947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최저기준은 아동의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공립·법인 보육소의 인가기준으로써 역할과 함께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최저기준의 내용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도 함께 명기하고 있다

최저기준은 제정 당시 일본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수준이 낮은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적으로 최저기준에 관한 중앙아동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현재의 일본의 보육소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최저기준의 내용은 너무나 높다]는 사실이 지적

된바 있다.

최저기준에 관하여 제 3조에서는 都道府縣이 지역의 실정을 참작하여 최저기준 이상으로 시설을 설비하여 운영할 것과 후생대신이 최저기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기준 제정 후 60년이 경과하였지만 현재 실제적으로는 보육사 배치기준 개정을 제외하고는 법률의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증가하는 국민의 보육요구를 받아들여 보육소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기준 이상으로 보육소를 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보육소 최저기준의 내용

최저기준은 아동의 보육권리의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04년 10월 현재 일본의 인가 보육소는 22,49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저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만 보육소로서 인가를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현재 보육소 최저기준의 내용은 시설의 면적, 설비의 내용등 대부분이 제정 당시와 그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보육사 배치기준만 2세 아동을 기준으로 2단계로 구분되었던 것이 3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저기준의 정식명칭은 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이지만 보육소에 관한 부분만 발췌하여 정리하면 그 내용은 <표1>과 같다.

〈표 1〉 보육소 최저기준

직원		시설설비		보육시간	
아동 보육사	보육사	2세미만	2세이상		
0세아동	3명	1명	• 영아실	• 보육실 또는 유희실	1일 8시간 원칙
1-2세아동	6명	1명	1.65평방미터/명	1.98평방미터/명	
3세아동	20명	1명	• 포복실(기능공간)	• 옥외운동장3.3평방	
4세이상	30명	1명	3.3평방미터/명	미터/명(근처공원	
촉탁의사, 조리원은 반드시 배치. 그러나 조리업무를 모두 외부에 위탁하는 화장실은 반드시 설치 경우에는 조리원 배치의무는 없음.		• 의무실, 조리실,	등으로 대체가능)		
			• 조리실, 화장실은 반드시 설치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비 : 소화용 기구, 비상구설치, 정기적인 훈련					
보육 실등을 2층에 설치했을 경우의 설비 : 내화건축물, 경사로또는 옥외계단,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비상경보기구 등					

자료 : 全國保育施設連絡會・保育研究所 編(2006). 2006 保育白書.

3. 보육현황

일본의 취학 전 이동을 위한 지원기관으로는 유치원과 보육소가 있다. 최초의 보육소는 여성노동력의 확보 또는 도시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탁아시설로서 설립되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1894년에 설립된 동경방직주식회사부설탁아소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학교교육법과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은

학교교육기관, 보육소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법적으로 정착되었다. 즉 학교교육법은 유치원에 대해 「유아를 교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아동복지법은 보육소의 목적에 대해 「부모가 근로,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양육하기 불가능한 영유아를 보육」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보육소를 정의하고 있다. 유치원과 보육소는 설립의 경위, 목적이 서로 다른 이원화된 행정 체계 내에서 아동을 교육·보육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운영되고 있다.

가. 보육재정

1) 재정규모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예산은 이전에는 모두 보육예산으로 운영되었으나 2004년도를 기점으로 일반재원과 후생노동성의 보육대책 예산으로 분리 운영된다. 이후 공립보육소와 법인보육소의 운영비는 일반재원에서 지원되고 있다.

그 이외에 특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에서는 대기아해소 지원금 314,109백만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정비 44,908백만엔, 기타 보육 서비스 충실 사업비 1,200백만엔을 지원하고 있다.

〈표 2〉 후생노동성 보육대책 관계 예산(2006)

단위: 백만원

내역		금액
대기아동 해소지원금	• 민간 보육소등 정비비	14,000
	• 민간 보육소 운영비	298,346
	• 대기아동 해소 촉진사업	571
	• 보육환경개선 등 사업	1,292
	소계	314,109
다양한 보육서비스 정비	• 연장보육 촉진사업	33,956
	• 일시·특정 보육사업	3,278
	• 휴일보육사업	488
	• 야간보육 촉진사업	40
	• 지역아동지원센터사업	5,737
	• 영아보육 촉진사업	1,000
	• 가정적 보육사업(보육마마 등)	409
소계	44,908	
기타 보육서비스 충실	• 가정지원추진보육사업과 복지보육소경비	
	• 자녀지원서비스 사업	830
	• 베이비시터 육아지원사업	320
	• 보육사 연수 등 사업	50
소계	1,200	
총계	360,217	

자료: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編(2006), 2006保育白書.

2) 지원방식

일본에서는 공립·법인의 인가보육소의 최저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육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육소 운영비²⁾라고 한다. 운영비는 보육단가제도를 통하여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보호자 부담액이 있고, 보호자 부담액을 제외한 차액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방식은 능력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하는 응능(應能)부담의 원칙을 적용한다. 즉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정하는 보호자 소득 기준에 따른 보육료 징수액은 <표 3>과 같이 7계층으로 나누어진다.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세대는 무상이고, 그 이외는 전년도 과세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적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³⁾. 아동연령별로는 교사대 아동 비율(0세 아 1:3, 1~2세아 1:6, 3세아 1:20 4세 이상 1:30)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육료는 3세 미만과 3세 이상으로만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다.

2) 예전에는 조차비라고 불렀음.

3)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2002년도 10월 현재의 계층 구분을 보면 제1계층이 1.3%, 제2계층이 14.9%, 제3계층 15.4%, 제4계층 19.1%, 제5계층이 20.6%, 제6계층 20.5%, 제7계층 8.2%이다. 제2계층 중에는 모자세대가 반이 넘는 8.0%를 차지하고 있음(日本全國果育協議會, 2003)

〈표 3〉 일본 중앙정부의 아동별 차등보육료 징수 기준

단위: 엔

계층구분	정의		월액	
	구분	세액기준	3세 미만	3세 이상
제1계층	생활보호법 피보호세대		0	0
제2계층	제1계층 및 제4~7계층을		시정촌민세 부과세대상	9,000
제3계층	제외한 세대 중 전년도 시정촌 과세기준			
제4계층			64,000엔 미만	30,000
제5계층	제1계층을 제외한 세대 중 소득세 과세 세대 중		64,000~ 160,000엔 미만	27,000 (보육단기한도)
			160,000~ 408,000엔 미만	44,500
제6계층	과세액에 따라 구분		408,000엔 이상	61,000
제7계층			80,000 (보육단기한도)	58,000 (보육단기한도)
			408,000엔 이상	77,000 (보육단기한도)

자료: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編(2006), 2006 保育白書.

위와 같이 중앙정부는 7단계의 보육료 징수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한층 세분화된 보육료 징수체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방식대로 보육료를 징수하면 보호자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판단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보호자 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보육료를 그대로 수납하는 지역은 없다. 실제로 요코하마시는 26단계, 동경도 세타가야구는 25단계, 나고야시는 18단계의 보육료 징수방식으로 보육료를 수납하고 있다.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3세 미만 보육료와 3세 이상 보육료로 구분된다. 또한 대

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 자녀 및 세 자녀가 동시에 보육소를 이용하는 경우 이들의 보육료를 크게 감면해 준다.

(표 4) 나고야시 보육료 징수기준(2006)

단위: 엔

단계		나고야시징수기준(2006)				국가징수기준(2005)	
		3세 미만아		3세 이상아		3세 미만아	3세 이상아
계층	소득세대	첫째아	둘째아	첫째아	둘째아		
A	생활보호세대	0	0	0	0	0	0
B	1층 비과세대(한부모세대등)	0	0	0	0	0	0
	2층 비과세대	3,700	1,850	2,400	1,200	9,000	6,000
C	1층 균등세만 적용	5,500	2,750	3,600	1,800	19,500	16,500
	2층 소득세5,000미만	6,200	3,100	4,200	2,100		
	3층 소득세5,000이상	7,300	3,650	5,600	2,800		
D	1층 3,000미만	10,800	5,400	8,200	4,100	30,000	27,000 (분담가한도)
	2층 3,000~15,000미만	13,400	6,700	10,500	5,250		
	3층 15,000~30,000미만	16,900	8,450	12,800	6,400		
	4층 30,000~60,000미만	21,300	10,650	15,600	7,800		
	5층 60,000~90,000미만	24,900	12,450	17,800	8,900		
	6층 90,000~120,000미만	28,400	14,200	20,000	10,000		
D	7층 120,000~180,000미만	33,800	16,900	22,000	11,000	44,500	41,500 (분담가한도)
	8층 180,000~240,000미만	41,300	20,650	24,900	12,450		
	9층 240,000~300,000미만	48,700	24,350	27,300	13,650		
	10층 300,000~450,000미만	56,500	28,250	28,200	14,100		
	11층 450,000~600,000미만	61,600	30,800	28,300	14,150		
D	12층 600,000~900,000미만	63,000	31,500	28,500	14,250	80,000 (분담가한도)	77,000 (분담가한도)
	13층 900,000 이상	64,000	32,000	28,700	14,350		

B층: 주민세, 소득세를 다 안내는 계층

C-1층: 주민세만 내는 계층

C-2층: 연간 소득세 5,000엔 미만에 따른 주민세 납부계층

C-3층: 연간 소득세 5,000엔 이상에 따른 주민세 납부계층

D층: 연간 소득세에 따른 보육료 납부계층

그러나 2006년 10월부터 실시되는 인정아동원, 보육실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시설은 보육료를 시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하게 함으로써 보육료의 응익(應益)부담회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보육료 등급 결정은 전년도 세액이 기준이다. 전년도에 비하여 당해 연도에 이혼, 결혼 등으로 보호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보육료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여 보육료를 감액,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당해년도 소득에 따라 연말에 보육료를 정산하는 제도는 없다.

인가보육소 보육료는 市町村에서 수납한다. 市町村은 보호자로 부터 수납한 보육료와 중앙 및 지방 정부 보조금을 합산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육소에 운영비로 지급한다⁴⁾. 법인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일시보육, 연장보육비용은 대체로 보육소에서 직접 수납한다.

유치원의 경우 보호자와 유치원이 입원을 직접 계약하여 교육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현재 유치원의 입학금, 수업료의 총액은 공립유치원이 연간 77천엔, 사립유치원 28만 5천엔 정도로 공, 사립간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문부과학성은 1972년부터 유치원 입학 장려보조금제도를 창설하여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추정하는 부모의 실질부담액 추정치는 <표5>와 같다.

< 표 5 > 연간 유치원의 보호자 부담 추정액

단위: 천엔

구분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생활보호세대 연소득 290만엔 이하	56	33	11	143	85	28
				177	105	35
연소득 360만엔 이하	77(보조 대상외)			201	120	40
연소득 680만엔 이하				225	135	45
연소득 680만엔 이상				285(보조 대상 외)		

주: 2006년도 자녀순위는 유치원 이용 자녀순이며, 2006년부터는 출생순위로 변경되었음.
 자료: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編(2006), 2006 保育白書.

4) 공립보육소는 원장과 교사가 공무원이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부담하고, 법인보육소에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운영비를 지급함.

3)보육재정 분담

일본 정부는 표준보육단가에 기초한 보육소 운영비 중에서, 부모부담 보육료를 제외한 1/2은 중앙정부, 1/4은 도도부현, 1/4은 시정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호자가 부담하는 보육료 및 전체 보육소 운영비에서 보호자 부담 보육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정부마다 각기 다르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보육소 운영비 만으로는 지역주민의 보육요구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지방정부마다 보육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모부담 보육료가 높다고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부모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대체로 지방정부가 국가 기준의 1.5~2.0배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지역차이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요코하마시의 경우 보육아동 약 42,000명 규모에 보육소 운영비 총 예산은 487억 6천만엔이다. 보호자 부담은 20.3%이고 중앙정부는 예산의 12.6%만을 부담한다.

〈표 6〉 일본 요코하마시 보육운영비 (2006)

단위: 억엔(%)

구분	국가 기준 운영비 295.9억(60.8%)						연장, 일시보육		보육수준 제고 부담		계
	법정부담			국가기준 보육료 징수							
	시립공설 민영(시)		국	시	보육료		시	국	시	시	보호자*
예산	32.6	61.4	61.4	99.2	41.4	9.8	10.2	170.4	1.2	487.6	
	(6.7)	(12.6)	(12.6)	(20.3)	(8.5)	(2.0)	(2.1)	(34.9)	(0.2)	(100.0)	

주: *는 시립보육소 시간연장 보육비 등임. 요코하마시는 지정도시로 가나가와현은 지원금 없음.
 자료: 日本 요코하마시(2006).

나고야시의 2006년도 보육소 운영비를 살펴보았다. 나고야시의 부모 부담분을 살펴보면 법에 의한 최저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국가기준 운영비 25,167,231천엔 중 부모 부담분 6,702,696천엔은 26.6%이다. 그러나 나고야시가 또다시 추가부담한 금액을 합한 총액 38,105,971천엔 대비 부모 부담분은 17.6%이다. 나고야시의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보육료는 27,965엔이고 부모가 부담하는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보육료는 16,762엔이다.

〈표 7〉 나고야시 보육소 운영비 개요 (2006)

총액	공립 16,745,163천엔 (+2.4%)	민간 21,360,808천엔 (+3.9%)	100.0%
38,105,971천엔 [95,297엔] (+3.2%)			
국가기준운영비*(나라가 정한 금액(공립포함))	초과부담 [32,358엔]		
25,167,231천엔 [62,939엔] (+4.0%)			(+1.5%)
66.0%	12,938,740천엔		34.0%

()는 1인당 월액임

국가기준보육료 * (-8.0%)	국고 부담	시 의무부담 공립, 민간, 기타지원	국가기준보다높은 기준시 민간급여보장
11,182,236천엔 [27,965엔]			12,938,740천엔
[공 3,913,260천엔 민 7,268,976천엔 29.3%	4,691,709천엔 [11,733엔]	9,293,286천엔 [23,241엔]	[32,358엔] 34.0%
부모부담 (+14.2%)	시 부담		시비부담
6,702,696천엔 [16,762엔]	4,479,540천엔 [11,203엔]		12,398,154천엔 [31,006엔]
[공 2,294,484천엔 민 4,408,212천엔 17.6%	<-0.1% 11.8%	12.3%	★ 32.5%

★ 국고보조금등 : 540,586천엔 [1,352엔], 1.4%

[] 안은입소 아동 월평균 1인당 금액임.

자료 : 나고야시 어린이양육소년국 자녀양육가정부 보육과(2006).名古屋市の保育.

나. 보육소 및 보육영유아

1) 보육률

일본의 0~3세미만 인구는 3,263,765명(2005)이고 이중 보육소 입소 아동은 545,692명으로 보육률은 16.7%이다. 3~5세 아동 인구는 3,497,299명이고 보육소 입소아동은 1,315,331명으로 보육률은 37.6%이다. 0~5세 전체적으로는 총인구가 6,761,064명이고, 보육소 취원아가 1,861,023명으로 0~5세 보육소 보육률은 27.5%이다.

그러나 3~5세 유치원 취원아 수가 1,738,766명, 취원율 49.7%로 보육소와 유치원을 합한 3~5세 총취원율은 87.3%이다.

〈표 8〉 일본의 영유아 취원율

단위: 명(%)				
구분	아동인구	보육영유아	유치원	취원아동
0~3세 미만	3,263,765	545,692 (16.7)	-	545,692 (16.7)
3~5세	3,497,299	1,315,331 (37.6)	1,738,766 (49.7)	3,054,097 (87.3)
0~5세	6,761,064	1,861,023 (27.5)	1,738,766 (25.7)	3,599,789 (53.2)

* 6세 보육유아: 229,351명

* 인구수는 2006년 10월 현재, 보육소, 유치원은 2004년 10월 현재 기준.

일본의 영유아 보육률을 한국과 비교해 보면 0-3세 미만 영아는 한국의 보육률이 21.4%로 일본의 16.7%에 비하여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5세 유아를 비교했을 때는 일본 87.3%로 한국의 75.3%에 비하여 일본의 보육/취원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9〉 한국의 영유아 취업률

단위: 명(%)

구분	아동인구	보육영유아	유치원	취원아동
0-3세 미만	1,426,933	305,555 (21.4)	-	305,555 (21.4)
3-5세	1,584,867	651,682 (41.1)	541,603 (34.2)	1,193,285 (75.3)
0-5세	3,011,800	957,237 (31.8)	541,603 (18.0)	1,498,840 (49.8)

2) 인가 보육시설 및 보육영유아수

일본의 보육소는 1955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고도성장과 함께 여성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급격히 증가되었다. 1970년대까지는 공립보육소 중심으로 증설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정부의 억제정책으로 감소경향을 보이던 보육소는 200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되었다.

2004년 현재 보육소는 22,494개소(공립 12,013개소, 법인 10,481개소)이고, 입소 아동은 2,090,374명(공립 1,020,513명, 법인 1,069,861명)이다. 공립·법인의 비율을 보면, 아동수는 비슷하나, 시설수는 공립이 53.4%, 법인이 46.6%로 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다. 1990년 후반 이후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보육소 입소를 희망하는 아동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표 10〉 보육소 및 영유아 수

단위: 개소명

연도	시설수	이용아동수
2000	22,199	1,904,067
2001	22,231	1,949,899
2002	22,288	2,005,002
2003	22,391	2,048,324
2004	22,494	2,090,374

자료: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編(2006), 2006 保育白書.

보육소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아동은 해마다 40,000명 정도이며 대기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소의 신설, 증설이 요청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보육수요 증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보육소를 증설하기 보다는 입소정원의 증원, 보육소 신설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정책으로 보육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모든 인가보육소는 市町村의 책임하에 운영되어 공립보육소는 市町村이 직영하며, 법인은 市町村이 운영 비용을 책임진다.

〈표 11〉 보육소 및보육 영유아 수(2004.10)

단위: 개소,명(%)

구분	계	공립	민간법인
기관수	22,494(100.0)	12,013(53.4)	10,481(46.6)
영유아수	2,090,374(100.0)	1,020,513(48.8)	1,069,861(51.2)

자료: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編(2006), 2006 保育白書.

3) 인가외 보육 현황

인가 외 보육은 베이비 호텔 1,587개소에 29,808명, 기타 인가외 시설 5,589개소에 149,044명이 취원해 있다.

(표 12) 인가 외 보육현황(2005)

단위: 개소명

구분	계	베이비호텔	기타 인가외시설
시설	7,176	1,587	5,589
영유아수	178,852	29,808	149,044

- 시설수는 전년(6,963개소)대비 3.2% 증가
 - 입소아동은 전년(176,909명) 대비 1.1% 증가
 - 자료 : 全國保育施設連絡會・保育研究所 編(2006), 2006保育白書.

4) 유치원 취원 현황

유치원은 1947년 제정된 학교교육법에 의해 학교교육기관으로 규정된 이후 취학전 유아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 양적, 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진행되어온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유치원 원아수와 기관수는 크게 감소되었다. 기관수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유치원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85년으로서 15,220개소(국립 48개소, 공립 6,269개소, 사립 8,903개소)였다. 2005년 현재의 기관수는 13,949개소(국립 49개소, 공립 5,546개소, 사립 8,354개소)로 20여년 동안 1,271개소의 유치원이 감소했다.

원아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78년으로서 2,497,730명이었다. 그 후 저출산으로 인해 원아수가 점점 감소하여 2005년 현재 원아수는 1,738,766명이다. 이와 같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수가 지난 20년간 감소하였으나 연령에 따라 3세 아동의 유치원 취원율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전체 유치원 아동 중 3세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에는 10.2%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24.2%까지 높아졌다. 또한 유치원의 정규교육시간 종료 후, 희망아동을 대상으로 연장보육을 하는 유치원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전체유치원의 약 70%, 사립유치원의 경우 약 85% 이상이 연장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유아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경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경영위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나가사키현을 비롯한 7개현 31개시를 구조개혁특구로 선정하여 2세 아동의 유치원 입학에 허용해 왔다. 2007년부터는 구조개혁특구의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일본 전국에서 2세 아동의 유치원 입학이 전개될 예정이다. 2005년 5월 1일 현재 유치원수와 취원아동수는 다음과 같다.

〈표 13〉 유치원수와 취원아동수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국립	공립	사립법인
기관수	13,949(100.0)	49(0.4)	5,546(39.7)	8,354(59.9)
원아수	1,738,766(100.0)	6,572(0.4)	348,945(20.1)	1,383,249(79.5)

자료: 全國保育園連絡会・保育研究所 編(2006), 2006 保育白書.

보육소외는 달리 유치원은 아동수, 시설수 모두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치원수는 공립·법인의 비율이 40:60이지만, 취원아동은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달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보호자 부담 보육료가 높으므로 공립유치원, 그리고 보육소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5) 보육소 종사자

보육소 종사자는 총 404,912명으로 이 중 상근자 355,698명, 비상근자 49,214명으로 상근자와 비상근자를 합하면 404,912명이다. 취원아 2,122,711명에 비하면 상근 교사 1명이 보육 영유아 6명을 담당한다.

〈표 14〉 보육소 종사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공립	민간법인
총수	404,912 (100.0)	195,426(48.3)	209,486(51.7)
상근	355,698 (100.0)	168,528(47.4)	187,169(52.6)
비상근	49,214 (100.0)	26,897(54.7)	22,317(45.3)

자료: 全國保育園連絡會・保育研究所 編(2006). 2006 保育白書.

6) 특수보육

❖ 일시보육

주 3일 정도 아동을 보육함으로써 보호자의 직장생활을 지원하고, 보호자가 질병, 입원, 가족간호 등으로 인해 아동을 보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0년도 일시적 보육사업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육아스트레스의 해소와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도 일시적 보육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녀양육지원을 위해서는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었지만 좀처럼 확충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보육사업을 위한 전용실 설치규정을 삭제(1996년)하고, 소규모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2000년 시책을 변경하였다.

❖ 휴일보육

1999년에 모델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보호자가 일요일, 공휴일 근무로 아동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휴일보육이 시작되었다. 현재 휴일에 운영하는 보육소에는 휴일보육사업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사업시행당시 하루 1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1시설당 300만엔 정도(이중 반액은 보호자가 부담)의 사업비를 설정하였다. 2003년에는 건수지불방식으로 사업비가 지원되었다가 2005년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재편되어 1시설당 154만엔을 지불하는 정액제 지원방식으로 되돌아갔다.

❖ 병아보육

병아보육(병든 아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보육소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질병에 걸렸을 때 보호자가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병아보육이라고 한다. 또한 질병 회복기에 있는 아동을 보육하는 것을 병(후)아 보육이라고도 한다. 병아보육은 시설, 市町村이 단독사업으로 1960년대부터 실시해 왔으나, 후생성의 위탁사업을 거쳐 1994년에는 병아테이서비스 모델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후생성이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다. 1995년부터는 영유아 건강지원 일시에탁사업으로 제도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학동보육

학동보육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이 부모의 취업으로 인해 가정내 보육이 불가능한 경우, 방과 후 또는 토요일, 여름, 겨울방학 동안 아동을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아동관, 초등학교의 여유교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동보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688,476명의 초등학생이 15,858개소의 학동보육을 이용하고 있다.

〈표 15〉 학동보육(2006)

단위: 개소명

연도	활동보육수(개소)	입소아동수(명)
1998	9,627	333,100
2003	13,797	538,100
2006	15,858	683,476

자료: 全國保育園總連絡會・保育研究所編(2006), 2006 保育白書.

4. 관리감독체계

가. 행·재정 감사

「사회복지법인감사요강(要綱), 일반감사요강, 특별감사요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의 내용은 1)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보육아동을 받아들이는 체제, 3) 직원의 취업·노동 조건, 4) 건물·설비의 관리, 5) 비상재해, 위해에 대한 관리, 6) 보육내용, 7) 재무관리 등이다(나고야 시의 감사 기준 참조).

나. 제3자 평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은 보육소를 대상으로 제3자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운영방법은 정부가 선정한 제3자 평가기관이 후생노동성이 책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보육소 자체평가, 이용자 조사, 평가조사자의 현지조사내용을 토대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제3자 평가의 긍정적인 면은 외부기관이 개입되면서 직원들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시한번 자신들의 보육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육소 제3자 평가제도는 인건비 삭감과 공적비용 억제를 지향하여 보육소의 시설설비 및 인원배치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와 연계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임시직원 파트직원의 증가와 직원업무부담의 확대로 보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육의 질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 평가제도 보다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범위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제3자 평가」가 2003년도 시범적으로 시작되었으나 2006년도 현재 발전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로는 제3자 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평가수행기관 및 평가자로 보육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성되기도 하여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 평가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 복지서비스 전반을 평가하는 '제3자 평가'에서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수준을 평가하고자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 제 3자 평가는 후생노동성이 전체 총괄한다.

-
- 지방자치단체별로 제3자 평가인증기구가 있으며 이곳에서 다시 평가업체에 시설평가를 맡긴다. 동경도에 121개소의 평가업체가 있다. 평가기간은 2~3개월이다. 비용은 60~80만엔정도로 평가결과 원점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단계 점수표로 구성되며 종합평가는 없다(2003).

최근 보육정책의 동향

1. 자녀양육 지원대책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고도 경제성장기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2.13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제2차 베이비붐 시대인 1973년을 정점으로 일본의 출산율은 하락국면에 접어들었다. 1973년도 합계 출산율은 2.14였다. 1980년대는 경기회복과 출산율 저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1989년도의 합계출산율이 인구대 체수준인 2.1을 밑도는 1.57로 발표되자, 일본 전국은 1.57쇼크현상에 빠져 들었다. 만혼화와 여성의 고학력화, 사회진출의 증가, 과중한 교육비용등 다양한 요인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1994년도에는 합계출산율 1.46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은 아동의 또래집단이 감소되면서 아동의 자주

성, 사회성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연금 등을 포함한 현역 세대의 사회보장비 부담의 증가, 사회경제의 활력저하로까지 연결된다. 따라서 정부는 저출산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1994년 12월 16일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장관 공동으로 엔젤플랜을 추진하게 되었다. 엔젤플랜이 끝나면서 이어 1999년에는 신엔젤플랜을 발표하게 되었다.

가. 엔젤플랜(1994년 12월 16일)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은 부부, 가정 문제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정부, 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 직장을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가 자녀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향후 10년간 자녀양육의 기본 방향과 중점시책을 정한 것이 엔젤플랜이다. 엔젤플랜의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다.

1.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고용환경 정비
2. 다양한 보육서비스충실
3. 모자보건의료체계 정비
4. 주택 및 생활환경 정비
5. 학교교육, 학교 외활동, 가정교육 충실
6.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7.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기반정비

특히 정부는 엔젤플랜을 바탕으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향후 5년간 보육대책의 목표치를 [긴급보육대책 5개년계획]으로 설정하여

1994년 12월 18일 대장성, 후생성, 자치성의 3부 장관의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저연령아보육(0세부터2세 아동)의 확대(45만명 → 60만명)
2. 연장보육서비스사업장비(2,230개소 → 7,000개소)
3. 일시보육사업장비(450개소 → 3,000개소)
4. 영유아건강지원데이스터서비스사업(30개소 → 500개소)
5. 방과후보육(4,529 → 9,000개소)
6. 다기능보육소장비(0개소 → 1,500개소)
7.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36개소 → 3,000개소)

나. 신엔젤플랜(1999년 12월19일)

엔젤플랜, 긴급보육대책 5개년 계획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1999년도의 합계출생률은 1.34까지 하락하였다. 정부는 만혼화로 인한 미혼율의 상승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자녀양육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제거하여, 자녀양육과 가정생활에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종래의 엔젤플랜과 긴급보육대책 5개년계획을 재정비하여, 보육서비스뿐만 아니라 고용, 모자보건, 상담, 교육 등의 사업도 함께 포함시켜 신엔젤플랜으로 발표하였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를 목표연도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실시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대장성, 문부성, 노동성, 후생성, 건설성, 자치성의 6대 대신의 합의에 의해 수립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4년까지 ① 저연령아 보육(68만명), ② 연장보육(10,000개소), ③ 휴일보육(300개소), ④ 현재 급여의 25%수준인 육아휴업급여를 40%까지 인상, ⑤ 불임전문 상담센터를 정비하는 등 47개 내용이다.

1. 보육을 포함한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의 충실

- 1) 저연령아동(0세부터2세)이 입소가능한 보육소 확충
- 2) 연장보육, 휴일보육등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추진
- 3) 지역자녀양육센터를설치하는등 재택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지원추진
- 4) 방과후아동클럽 추진

2. 직장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고용환경 정비

- 1) 육아휴업과 직장복귀가 손쉬운 환경의 정비
- 2) 단시간근무제도의 확충
- 3) 출산과자녀양육으로 인해 퇴직한사람을 위한재취업지원

3. 고정적인 성역할 분업 및 직장우선풍토의 시정

4. 불임전문상담센터의 장비 등 모자보건의료체제 정비

5. 이동양육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환경 정비

6. 자녀양육의의의와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환경 정비

7.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부담 경감

- 1) 육영장학사업확충
- 2) 유치원취원 장려사업의 충실

8. 자녀양육을 위한 주택장비사업

- 1) 여유로운 주택생활 환경 실현
- 2) 직장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정비

다. 차세대육성 지원 대책과 지역사회 행동 계획

엔젤플랜, 신엔젤플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하락현상은 지속되어 신엔젤플랜의 종료시점인 2003년 합계출산율은 1.29까지 하락하였다. 정부는 저출산 현상이 사회경제, 복지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종합적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이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금까지의 자녀양육 지원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노동정책, 가족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환경을 정비하고자 2003년 7월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을 제정하였다. 차세대육성 지원대책추진법은 2005년부터 2015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한입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종업원 300명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지역별 행동계획을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지역자치단체는 차세대육성지역 행동계획을 책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국가책임의 불명확성, 이동의 권리보장시점의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보육소 활용방안의 전환과 구조개혁

1947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공적보육제도의 토대를 구축한 일본은 1955년부터 시작된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근로여성들의 보육요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1970년대 말에는 공립보육소의 비율이 6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까지 민간보육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던 개인설립 보육소도 정부의 법인화 정책에 의해 사회복지법인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1980년 인가보육소 수는 22,036개소(공립 13,311개소 법인 8,725개소) 입소아동수는 1,996,082명(공립 1,188,340명 법인 807,742명)으로 시설 수, 아동 수 모두 60%이상을 공립이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늘어나는 보육예산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사회복지예산 절감을 이유로 1980년도부터 1990년도 중반까지 보육소 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출생 후 3세까지는 어머니에 의한 양육이 아동의 성격형성에 좋다는 것도 당시 보육소 억제론자들의 주장 중 하나였다.

그러나 1989년 합계출산율이 인구유지 수준을 밑도는 1.57을 기록함과 동시에 남녀평등의식의 확대와 함께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게 되자 정부 보육정책의 적극적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중반이후 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선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1990년도 중반이후 보육예산의 절감, 행정 경비의 효율화가 정부관계자들 사이에서 주장되면서 보육소의 신설, 증설보다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보육요구에 대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소 정원을 초과한 아동입소가 1998년

허용되었다. 또한 보육소의 설치주체 제한이 2000년도부터 철폐되면서 민간기업도 보육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가. 규제개혁 민간개방추진회의 보육소 제도 개혁론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실시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현행의 공적보육제도의 기초가 마련되면서 일본의 보육은 양적,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1990년 후반 이후 행정의 전 분야에서 경비효율화가 강조되자 정부 일각에서는 공적 보육제도가 보육의 공급확대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공적보육제도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규제개혁 민간개방추진회의는 보육소제도를 개혁하여 보육을 시장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의 보육소 운영제도가 市町村이 지정해 주는 보육소에 아동이 입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가보육소는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육소 개혁론자들의 주장이다. 인가보육소의 입소대상을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아동을 포함하여 취학전 모든 아동에게 개방함과 동시에, 입소방식도 이용자가 보육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의 보육소 보육료는 보호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부담으로 보호자의 보육료를 경감해 주고 있으므로, 인가보육소 이용자는 인가의 보육소 이용자에 비해 저렴한 보육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논리에 따라 보육료를 부과하여 모든 보육

소가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설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자신이 받은 서비스의 양에 비례하여 보육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보육소 입소에 대한 결정권은 市町村에 있으므로 보육소 설비의 상황, 입소 정원, 직원, 보육시간, 보육료 등에 대한 정보를 市町村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보육소를 직접 선택하여 아동의 보육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보 제공은 각 보육소가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민간기업의 보육사업 참여촉진을 위한 보육소 인가기준 개정 요구
구체적으로 0세 - 1세 영아의 1인당 포복실(보행을 하기 전의 영아가 기거나, 배밀이를 할 때 필요한 보육실)면적의 최저기준을 현재의 3.3평방미터에서 2.5평방미터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가 인가보육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재의 회계기준(사회복지법인회계준칙에 기초한 재무제표)을 변경해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다.

다. 보육료 보조방식의 변경 요구

이용자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시설보조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보육료 지원방식을, 취학전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보조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가 사회복지제도라는 기존의 생각에서 탈피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전체가 함께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사회보험제도(육아보험)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2006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인정아동원의 입소절차는 규제개혁 민간개방추진회의의 보육소 개혁안이 실제적으로 반영된 구체적 실례이다. 인정아동원의 입소가 현행의 보육소 입소방식과는 달리 보호자와 시설의 직접계약 방식으로 전환되고, 보육료도 인정아동원이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보호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의 인가보육소 기준에 미달하는 동경도의 인증보육소와 같은 형태가 인정아동원의 4번째 유형인 지방재량형 인정아동원으로 공식적으로 용인되었다. 경비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일부 정부관계자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육소 규제개혁안 현상의 하나이다. 실제적으로 공립보육소의 민간위탁을 시도하는 자치단체도 있으나 공적보육제도의 개선, 발전을 희망하는 국민의 보육요구 역시 강렬하여 보육의 시장화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재정지원체계의 변경

아동복지법은 보육소의 최저기준을 유지하고,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인 운영비에 대해 중앙정부, 都道府縣, 市町村이 공동분담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적비용에 의한 보육소 운영비의 의무규정이 있었으므로 보육소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의 재정력의 차이에 좌우됨 없이, 인가보육소는 전국 어디에 있든 아동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보호자부담비율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다. 1970년대는 35%, 1980년대는 50%로 급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 저출산에 대한 자녀양육 지원으로 보육정책이 전환되면서 현재의 부모 부담률은 45%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에서는 부모 부담률이 20% 수준까지 떨어진다.

한편 지금까지 보육소 운영비는 국고부담금제도의 원칙하에 市町村을 통해서 보육소에 지급되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지방의 자율성, 삼위 일체개혁]으로 대표되는 지방분권의 원칙 하에서 공립보육소의 운영비는 일반재원에서 지출되게 되었다. 즉 보육소 운영만을 위한 예산으로 한정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지급되어 온 종래의 방식과는 달리, 일반재원화로 인해 공립보육소 운영비는 지방의 재량에 의해 증액, 감액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육소 운영비의 일반재원화는 지방의 재정역량과 지방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보육소 예산이 좌우되어 지방자치단체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 민간참여 활성화 정책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의 힘으로’ 라는 구조개혁정책에 영향을 받아 1990년대 이후 공립보육소의 민간위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조사에 의하면 2005년도 현재 민간위탁 시설은 약 700개소 정도로 전체 공립보육소 12,000개 시설 중 5.8% 수준

이다. 그러나 영리기업의 참여 등 일련의 규제완화추진, 2004년도부터 시작된 공립보육소의 일반재원화로 인해 보육소의 민간위탁은 앞으로 더욱 더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오오사카부에서는 현재 거의 대부분의 市町村에서 민간위탁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보육에 민간위탁이 끼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재 각지에서는 민간위탁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행정측이 패소하는 사례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일단 결정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변경되지 않는다는 종래의 재판과는 달리 민간위탁으로 인해 보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보호자의 우려에 재판소가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민간개방추진회의」는 공적비용을 경감하고 보육의 충실화를 위해 보육의 시장화·영리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 현재의 보육수준을 유지하면서 예산증액 없이 공급량 확대가 가능하다면 민간위탁은 현재의 보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비절감이 주된목적인 공립보육소의 민간위탁은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중 보육의 질을 결정짓는 인적조건의 저하가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소 민간위탁은 표면적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보육교사 인건비 삭감을 통한 운영비 예산의 절약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계기로 정규직원을 채용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비정규직, 파트타임의 보육사를 채용하여 영유아기의 보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보육사의 전문성이 낮아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4. 유아교육 · 보육 통합정책

일 본의 취학전 이동을 위한 양육지원기관인 유치원과 보육소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은 문부과학성, 보육소는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운영된다. 모든 이동에게 보육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유치원과 보육소 일원화문제는 관계자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실현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출산 현상으로 유치원의 원아수가 감소하여 유치원 경영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반면 보육소는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보육소 입소를 희망하는 아동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새로이 보육소를 신설, 증설하기 보다는 유치원의 비어있는 교실을 이용하여 보육소 이동을 흡수하고자 하는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원화 논의가 현장관계자가 아닌 정부관계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가. 추진경과

「모든 아동에게 보육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유치원과 보육소 일원화 문제는 유치원과 보육소 설립당시부터 논의되어온 과제이다. 이는 1998년 정부가 [유치원과 보육소 시설의 공용화 등에 관한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체화 사업이 실제적으로 추진되었다. 2004년 5월 현재 공립 172개 시설, 사립 132개 시설, 총 304개 시설이 유치원과 보육소의 기능을 통합하여 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6〉 유치원과 보육소 통합추진경과

연도	유치원	보육소
1947년	학교교육법 공포	아동복지법 공포
1956년	유치원 교육요령작성	
1963년 10월	문부성, 후생성 공동성명(「유치원과 보육소의 관계에 대하여」) 유치원과 보육소의 기능의 차이를 인정한 후, 보육소의 보육내용은 유치원교육 내용에 의거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함.	
1965년		보육소보육지침작성(유치원교육 내용에 기초)
1987년	임시교육심의회 최종답신: 유치원의 시간연장, 보육소는 사적계약아동의 입소를 촉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할 것을 제시	
1998년 3월	문부성, 후생성 공동통지「유치원과 보육소 시설의 공용화에 관한 지침」,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과 보육소의 설비, 운영의 공유, 직원의 겸직 등 탄력적으로 대처할 것을 명기	
1998년	유치원교육요령개정(연장보육, 자녀양육지원사업의 추진 명기)	
2001년 7월	후생노동성이 유치원교원면허와 보육사자격동시 취득을 지원할 것을 표명	
2002년 10월	지방분권개혁추진회의 최종보고서에서 유치원과 보육소 일원화 검토 제기	
2002년 12월	「종합규제개혁회의 제2차 답신」,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체적 운영의 추진 제기	
2003년 6월	「경제제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3」취학전 아동에게 보육, 교육을 일체로 제공하는 종합시설에 대해서 제기	
2004년 12월	중앙교육심의회, 사회보장심의회 공동검토회의 「취학전 아동에게 보육, 교육을 일체로 제공하는 종합시설」대한 최종심의서 발표	
2005년 4월	종합시설 시범사업 실시(36시설)	
2006년 1월	종합시설로 검토해온 사업을 인정아동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과, 都道府縣이 시설인정 업무를 맡을 것을 결정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을 결정	
2006년 3월	인정아동원 운영의 근거가 되는「취학전의 아동에게 교육, 보육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안」을 각의 결정하여 국회 상정	
2006년 6월	「취학전의 아동에게 교육, 보육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안」, 가결	
2006년 10월	「00인정아동원」 본격적 실시	

자료 : 全國保育園施設連絡會・保育研究所 編(2006), 2006保育白書.

나. 인정아동원 운영 개요

인정아동원은 2003년 정부가 「경제제정 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3」에 들어있는 「취학전 아동에게 보육·교육을 일체로 제공하는 종합시설」의 제안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원래 이 제안은 2002년 10월 재정지출을 삭감하기 위해 지방재정문제를 토론하는 지방분권개혁추진회의에서 경비의 절감을 위해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원화 문제가 거론되면서 대두되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유치원, 보육소 관계자가 관여한 제안이 아니라는 점으로 부터의 저항감도 있었으므로 구체적 실시는 불투명하였다. 그러나 경비절감을 위해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정부 내의 의견도 강경하였다. 따라서 타협안으로 유치원, 보육소 제도와는 별도로 [종합시설]이 제안되어 정부 방침으로 확정되게 되었다.

정부는 2005년도에 36개시설을 종합시설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운영결과를 토대로 [취학전의 아동에게 교육,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이 2006년 6월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종합시설의 명칭을 인정아동원으로 확정하여 2006년 10월1일부터 시행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인정아동원은 취학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교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현재 설비·운영 상황이 불완전한 인가 외 시설을 인정 아동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현재의 기준 보다 낮은 보육시설을 법적으로 용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정아동원 운영의 근거법령인 「취학전 아동에게 교육, 보육등을 종합적으로

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시하는 인정아동원의 유형과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정아동원의 유형

- 유보연계형 인정아동원 : 인가유치원과 인가보육소가 동일 장소에 건축되어 일체적으로 운영되는 형태
- 유치원형 인정아동원 : 인가유치원에 비어있는 보육실을 정비, 또는 새로이 인가와 보육소를 설치하여 일체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 보육소형 인정아동원 : 인가보육소에 유치원아동을 입소시켜, 유아교육, 보육을 제공하는 형태
- 지방재량형 인정아동원 : 유치원, 보육소중 어느 쪽의 인가도 받지 않는 시설이 지방의 재량에 의해 인정아동원으로서 공적인 보육시설로서 인정을 받는 형태임. 대표적인 예로 동경도의 인증형 보육소를 들 수 있음

② 직원배치

- 0-2세 아동은 보육소직원 배치기준에 준거
- 3-5세 아동의 경우, 유치원 설치기준, 보육소 직원 배치기준에 근거
- 3세 이상의 경우 35명이하의 아동으로 학급을 편성하여 학급담당 입체제로 보육

③ 직원자격

- 3세 미만 보육소 아동의 보육은 보육사자격증 소지자가 담당
- 3세 이상 아동의 경우 유치원교사, 보육사자격증을 모두 가진 사람이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만 가져도 무방

④ 인정아동원의 인정 기준

- 문부과학성 장관과 후생노동성 장관이 협의하여, 인정아동원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都道府縣지사 또는 都道府縣교육위원회는 정부기준을 참작하여 인정의 기준을 설정하여 조례에 명시
- 都道府縣지사 또는 都道府縣교육위원회가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아동원의 승인여부 결정

⑤ 입소방식

- 이용자와 인정아동원과의 계약에 의한 입소방식

절차: 이용자가 인정아동원에 신청서 제출 → 인정아동원은 신청서를 市町村에 송부 → 市町村이 보육대상아동의 자격유무를 판단하여 인정아동원에 통보



⑥ 보육료

- 지금까지 보육소의 경우 市町村이 보육료 설정, 징수를 담당하였으나 인정이동원의 경우 보육료는 인정이동원이 설정하여 징수

⑦ 급식실의 설치

- 유보연계형, 유치원형, 지방재량형의 인정이동원이 급식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외부에서 조리하여 급식을 반입하는 것 허용

정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인정이동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하에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 공동으로 [인정이동원에 관한 정부의 지침]을 확정하여 2006년 8월 4일 발표하였다. 인정이동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침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아직 절반에 가까운 자치단체가 조례를 확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행시기도 2007년 이후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치단체의 인정이동원 예상 수]를 보면 홋카이도만이 100여개의 시설이 인정이동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1~10개 시설만이 인정이동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홋토리현과 토야마현은 인정이동원을 신청하는 유치원, 보육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부가 아동의 보육권리의 보장 보다는 경비절감을 위해 인정이동원의 시행을 의도하고 있으나 아동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필요

한 보육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일본국민이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	주요 CHECKPOINT
<p>1. 시설운영 전반 (1) 시설운영 기본방침이나 조직이 확립 되어있는가?</p>	<p>① 시설운영의 기본방침이나이것에 의한 관리 제규정이 확립·정비 되어있고 직원 등에게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주지시키고 있는가? ② 조직, 업무분장이 명확하고, 업무를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한 직원 회의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③ 시·구·군 복지사무소등과의 연락이나 동 모임, 아이들 모임, 아동위원의 지역활동 등과 연계가 잘 시행되고 있는가? ④ 시설일지, 아동출석부 등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서류가 확실하게 정비, 기록되고 있는가?</p>
<p>(2) 취업규칙 등이 제정되어 있는가?</p>	<p>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여 제정되어 있는가? 직원의 의견을 첨부해서 감독청에 제출하고 있는가? 직원에게 주지시키고 있는가? ② 취업규칙, 급여규정이 충분히 잘 지켜지고 있는가?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사실은 없는가?</p>
<p>2. 보육아동을 받아들이는 체제</p>	<p>①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대단히 적지는 않은가? 반대로 정원을 초과해서 입소시키고 있지 않은가? 3세미만 아동이나 5세아에 대하여 입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② 보육시간이 8시간을 하회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은가? 보육시간에 따른 조기 출근, 늦게 출근 등 보육사의 근무시간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필요 이상으로 개설일수를 적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p>
<p>3. 직원의 취업·노동 조건</p>	<p>① 시설장의 경우, 그 직책을 원수하기 위해서 항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가? 운영전반의 상황이나 문제점을 충분히 장악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노력하고 있는가? 앞으로의 계획을 실시단계에서 규명하고 있는가? 직원에게 주지, 납득시키고 있는가? ② 직원이 기준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결원기간이 없는가? 무자격자를 보육사로서 채용하고 있지 않은가? 상근해야할 직원을 비상근으로서 채용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③ 직원의 근무시간이나 휴식시간의 할당 등은 합당하게 되어 있는가? 또는 출산휴가·병가·연차 휴가시 대체 직원의 확보나 근무 시간대의 조정 등은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는가? ④ 급여수준은 타당한가? 초임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동보험, 퇴직수당 공제제도 가입은 합당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⑤ 직원에 대한 연수는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가?</p>

연도	주요 CHECKPOINT
4. 건물·설비의 관리	<p>① 최저기준을 밑도는 설비로 되어 있지는 않은가? 노후나 위험하게 되어있는 것은 없는가?</p> <p>② 주방등의위생설비, 급배수 설비, 오물처리설비 등의 보수는 완전한가?</p>
5. 비상재해, 위해에 대한 관리	<p>① 화재발생시 소화, 통보, 피난을 위한 조직표 작성, 설비의 보수, 훈련 등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화재 이외의 경우는 어떠한가? 소방서와의 연락은 잘되고 있는가?</p> <p>② 시설내외의 환경정비나 보안점검, 정비에 대하여배려하고 있는가?</p>
6. 보육	<p>① 보육계획, 지도계획(연간, 월간, 주간 및 일간 안)은 책정되어 있는가? 그 계획들의 책정책임자의 선정은 타당한가? 책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는가? 책정의 전제가 되는 입소아동의 실태를 수량화해서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가?</p> <p>② 매일 매일의 건강상태를 어떠한 점에 대해서, 언제 파악하고 있는가? 등하교시 보호자와의 인계는 어떠한 점에 유의하고 있는가?</p> <p>③ 집단 활동, 개별지도 등을 통한 생활지도는 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 지도목표에 따른 지도방법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있었는가? 지도상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p> <p>④ 식사의 영양은 합당한가? 식사회수, 식사시간은 적당한가? 식사의 가정교육은 잘 시행되고 있는가? 3세이상 아동과 3세미만 아동의 배려는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식사장소의 청소나 보존음식의 보존상황은 적절한가?</p> <p>⑤ 아동, 직원에 대한 정기건강검진 급식직원의 대변검사는 확실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 결과의 처리는 어떠한가?</p> <p>⑥ 아동표, 보육일지, 급식일지 등 처우 상 필요한 기록은 충분히 시행되고 있는가? 내용에 관하여 통일적인 기재사항을 동일하게 만들고, 아동심신의 발달경과를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p>
7. 재무관리 (1) 경리규정	<p>① 경리규정이 제정되어 있는가? 그 내용은 필요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는가?</p> <p>② 회계단위, 경리구분에 따라 명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계정과목의 설정은 적당한가? 장부, 전표 등의 장부조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p>
(2) 예산의 편성, 집행	<p>① 당초예산, 보정예산 편성시기, 적산내용, 계상과목은 적당한가? 전년도 이월금의 계상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p> <p>② 조치비, 보조금, 기부금, 이용료 수입 등 세입의 청구, 수입은 확실하고 신속하게 시행되고 있는가?</p>

연도	주요 CHECKPOINT
(2) 예산의 편성, 집행	<p>③ 조치비의 지출내용, 적산, 지출과목은 타당하게 되어 있는가? 소정의 수속에 따라 지출되고 있는가? 사업비와 사무비와의 사이에 유용이 있는 경우 그것은 적절한가?</p>
(3) 결산	<p>① 수지계산서를 작성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장부, 증거서류가 서로 맞는가? 이월금액을 확정하였는가?</p> <p>② 예산결정선에 따라서 지출되고 있는가? 예산유용이나 보정에 의한 지출상황은 타당한 것인가?</p> <p>③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의 지출내용은 타당한 것인가?</p> <p>④ 이월금이나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있는가?</p> <p>⑤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는가? 타 회계대부금(타 회계차입금), 미수금, 미불금의 내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가? 기금에 증감이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차입금의 변제계획이 만들어져 있는가? 계획대로 변제가 시행되고 있는가? 예금현재잔고를 서로 검토는 하였는가?</p>
(4) 경리사무 및 자산관리	<p>① 예산, 결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 수속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감사의 감사가 시행되고 있는가?</p> <p>② 월간보고서, 결산시산표를 작성하였는가? 회계제장부의기장, 정리, 보관은 적절한가?</p> <p>③ 금전출납, 계약, 채권채무, 고정자산, 물건의 관리는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재산목록과 조회 등이 되고 있는가?</p>

구분	장부, 명부 등	비고
1. 법인 및 시설관리 관계	① 정관 ② 법인인허가, 보육원설치 인가서 ③ 이사회 의사록 ④ 이사, 감사의 취임승락서철 ⑤ 보육원규칙 ⑥ 취업규칙 시간외노동협정 급여공제에 관한 협정 급여규정 여비규정 경조규정 ⑦ 경리규정 ⑧ 배상책임보험 등 각종보험철 ⑨ 사업계획, 사업보고서철 ⑩ 보육원업무일지	
2. 직원관계	① 직원채용, 퇴직에 관한 서류 ② 직무분담표 ③ 직원명부 이력서 자격서 ④ 직원출근부 ⑤ 직원건강진단기록부 채용시의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⑥ 직원대변검사기록(검사결과보고서 정리) ⑦ 사회보험(건강보험, 연금보험, 노동보험)관계서류 ⑧ 소득세, 주민세 관계서류 ⑨ 퇴직공제회 가입관계서류 ⑩ 직원회의기록부 ⑪ 직원연수기록부	

구분	장부, 명부등	비고
3. 회계경리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시대차대조표 ② 재산목록 ③ 부동산대장 고정자산물건대장 ④ 비품대장 ⑤ 차입금대장 ⑥ 총계정원장(계산표) ⑦ 부기장부 ⑧ 보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관련경비보조부 사적이용료징수부 직원실비징수부 보호자실비징수부 기부금물품대장 ⑨ 필요에 따라서 작성하는 보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현금출납장 은행계산장 예금대장 등 ⑩ 급여대장 ⑪ 증빙서류철 ⑫ 보육실시위탁비, 시보조금청구서 ⑬ 예산서(당초, 수정예산서, 집행계획) ⑭ 결산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⑮ 결산시산표 ⑯ 결산부속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전현재잔고 명세서 예금잔고증명, 당좌잔고조회서 차입금명세서 대부금명세서 미수금, 미불금, 예약금명세서 물품현재잔고 보고서 	
4. 비상 재해 관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화관리자선임계 ② 소방계획 	

구분	장부, 명부등	비고
4. 비상 재해 관계 기타	③ 지진방재응급계획 ④ 소방서입회검사관계서류 ⑤ 소방용설비 등 점검결과보고서 ⑥ 비상재해훈련실시요령(긴급연락체계를 포함) ⑦ 비상재해훈련실시기록부 ⑧ 수질검사증명서	
5. 아동관계	① 아동명부 ② 입소관계서류 ③ 아동표(보육경과기록을 포함) ④ 아동건강진단기록부 ⑤ 보육계획 ⑥ 지도계획 연간지도계획서 월간지도계획서 주안 ⑦ 보호자연력문서철 ⑧ 보육일지	원소식, 반소식 등
6. 급식관계	① 집단급식개시계 ② 급식예정철 ③ 급식실시철	

참고문헌

- 나고야시 어린이청소년국 자녀양육가정부 보육과(2006). 名古屋市の保育.
- 나고야시 어린이청소년국 자녀양육가정부 보육과(2006). 名古屋市の 保育所長 研修會 資料.
- 서문희(2006. 9). 일본 보육정책 출장보고서. 미발간 자료.
- 여성가족부(2004. 6). 선진국 보육정책 실무연수 결과보고서.
- 유희정(2004. 12). 일본, 호주 출장보고서. 미발간 자료.
- 유희정(2006. 9). 일본 보육정책 출장보고서. 미발간 자료.
- 日本 全國保育協議會(2003). 保育年譜.
- 日本 中央法規(2006). 保育所 運營 핸드북.
- 全國保育團體連絡會·保育研究所 編(2006). 2006 保育白書.
- 日本 厚生省 兒童家庭局編(1994). 利用し やすい保育所を 目指して.

유희정

이화여자대학교 학사(영어영문학 전공)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유아교육 전공)

현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

일본 보육정책 동향

발행인 • 이옥

발행처 • 육아정책개발센터

편역 • 유희정

발행일 • 2006년 12월

주소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1층

<http://www.kicoe.re.kr>

대표전화 • 02) 730-7070

팩스 • 02) 730-3313

인쇄 • 도서출판 한빛문화 02) 313-7593(대)

ISBN 978-89-92396-06-6

정가: 5,000 원



Child Care

Education



Policy



Korea Institute of  hild Care and Education
110-734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1층
Tel. 02-730-7070 Fax. 02-730-3313

